

『호모 미그란스』 원고 작성법

2018년 8월22일 수정

제 1 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투고 원고는 본문, 필자의 e-mail 주소, 핵심 주제어(Key Words)[한글(영문)],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반각)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 ; ‘프랑스 사노당(FTSF)’
 - (3) 『』(반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 (4) 「」(반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인용 문헌의 페이지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1)홍길동√ 편, √ 『서양사강의』√ (서울:√ 길동출판사, √ 1992), √ 12쪽.

(예2)홍길동, √ 「그리스인의√ 역사서술」, √ 허균√ 편, √ 『서양고대사√ 강의』√ (서울:√ 길동출판사, √ 1996), √ 12쪽.

(예3)Gary√ Kates, √ ed., √ *The√ French√ Revolution:√ Recent√ Debates√ and√ New√ Controvers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1998), √ p.√ 12.

(예4)J.√ S.√ Morrill, √ “The√ British√ Patriarchy?√ Ecclesiastical√ Imperialism√ under√ the√ Early√ Stuarts” , √ A.√ Fletcher√ &√ P.√ Roberts, √ eds., √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4), √ p.√ 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홍길동, √ 「호레이쇼√ 얼저와√ 성공신화」, √ 『미국사연구』, √ 4집(1996), √ 12쪽.

홍길동, √ 『프랑스√ 근대사√ 연구』√ (서울:√ 길동출판사, √ 1998), √ 12쪽.

(예2)木畑洋一, √ 『帝国のたそがれ:√ 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1996年).

(예3)草光俊男, √ 「東アジアの構築:√ 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 √ 『史学雑誌』, √ 3号(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

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p. 9.

(예2) Michel Vovelle, *La Révolution contre l'Église-De la Raison à l'Être Suprême* (Paris: Gallimard, 1988), pp. 12-13.

(예3) Michael Schneider,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ürzung in Deutschland* (Köln: Suhrkamp, 1984), p. 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연도), 인용 페이지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1952), p. 287.

(예2) Serge Bianchi,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249(1982), p. 364.

(예3) J. Kocka,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 pp. 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 『서양 문화사』 (서울: 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같은 책, 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 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120.

- Ibid.

- Ibid., p. 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 라는 표

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홍길동, √『서양의 √ 지적 √ 전통』√ (서울: √ 길동출판사, √ 1998), √ 13쪽.

→ 홍길동, √『서양의 √ 지적 √ 전통』, √ 15쪽.

(예2)William √ Sewell, √ *Work √ and √ Revolution √ in √ France: √ The √ Language √ of √ Labor √ from √ the √ Old √ Regime √ to √ 1848*√ (Cambridge: √ Cambridge √ University √ Press, √ 1980), √ p. √ 120.

→ Sewell, √ *Work √ and √ Revolution √ in √ France*, √ p. √ 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E. √ J. √ Hobsbawm, √ *강명세 √ 역*, √『1780년 √ 이후의 √ 민족과 √ 민족주의』√ (서울: √ 길동출판사, √ 1994), 30쪽.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10) 참고 문헌은 자료, 저서(단행본), 논문 순으로 배열한다. 참고 문헌은 언어별(한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순)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참고 문헌의 표기는 각주의 저서, 논문의 표기 방법을 따르지만 서양사의 경우는 성, 이름,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

Brantlinger, √Patrick √ed., √*Dark √ Vanishings* √(Ithaca: √Cornell √ University √Press, √2013).

Sewell, √William, √*Work √ and √ Revolution √ in √ France: √ The √ Language √ of √ Labor √ from √ the √ Old √ Regime √ to √ 1848*√ (Cambridge: √ Cambridge √ University √ Press, √ 1980).

제 2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작성 샘플>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I. 머리말

인간 신체의 일부분인 유해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영혼이 깃들여있는 신성한 것이다. 하지만 무덤에서 영면해야 할 인간유해가 수집되었고 대중들에게 전시되었다. 인간유해는 반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화재 ‘약탈’ 과는 다르다. 인간유해의 약탈 행위는 죽은 이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며 비도덕·비윤리·비인간적인 영제국의 잔혹한 행위였다. 근대 박물관의 수집품 중 하나였던 인간유해는 근대를 지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반환되지 못한 채 아직도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1960년대 이후에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간유해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직 큰 성과가 없으며 인간유해의 반환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²⁴⁾

사실 인간유해에 관한 연구는 독립된 주제로 주목받지 못했고 근대 박물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근대 박물관 연구 이론에 함께 적용되었으며 인간유해는 박물관의 유물이자 전시 사례로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근대 박물관은 산업 및 자본주의의 발전과 근대, 근대와 제국의 상징으로서 박물관 ‘전시’ 라는 도구로 형성된 시각문화와 사회적 관계와 연관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80-90

24) 인간유해 반환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곳은 미국으로, 먼저 1989년 국립아메리카인디언 박물관법(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Act, NMAIA)과 1990년 아메리카인디언 분묘보호 및 원상복구법(Native American Graves Repatriation Act, NAGPRA)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박진빈, 「미국 원주민 유물 처리 문제와 반환법의 역사적 의미」, 『미국학논집』, 43권2호(2011) 참고.

년대에 이르면 미술사 분야에서 근대 미술 전시, 근대 미술관의 권력, 이 데올로기의 관계로 접근했다. 즉 전시란, 단순히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이후 박물관에 대한 연구는 전시의 정치적 담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²⁵⁾ 근대 박물관은 식민 제국시기에 근대 권력과 지식의 담론 속에서 권력의 표상을 실현하는 공간, 제국의 프로파간다를 지지하는 장소였다.²⁶⁾ 인간유해의 수집과 반환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러한 근대 박물관의 특성, 근대 박람회 개최, 기인한 불거리였던 인종전시와 인간 동물원(human zoo), 괴물쇼(freak show)의 등장, 근대 지식과 편견, 과학의 등장, 인종주의 등 근대 형성물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박물관 연구를 통해 형성되었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센터가 자연사박물관에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반환을 요청했고 자연사박물관 이사회는 2006년 11월에 유해 반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반환 이전에 자연사박물관의 책임자인 마이클 디슨(Micheal Dixon) 박사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들의 DNA 샘플을 채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²⁷⁾ 본래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사후 검시적인 실험은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²⁸⁾ 인체조직법에 따라 100년이

25) 윤난지 편,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전시의 담론』 (눈빛, 2002), 7-8, 12쪽.

26) 영제국사가 존 매킨지(John MacKenzie)의 『프로파간다와 제국: 영국 대중 조작하기(*Propaganda and Empire: the Manipulation of British Public, 1880-1960*)』에 의하면 제국의 이념은 박람회, 연극, 보이스카우트 활동 등의 사례들에서 잘 드러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매킨지와 팀 베링어(Tim Barringer)에 따르면 1851년 박람회 이후 사우스켄싱턴 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 즉 오늘날 빅토리아앤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은 일종의 제국의 파노라마로서 영제국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고 유통하는 식민주의 기관이었다. 베링어는 제국 시기 전시복합체로서의 19세기 박물관을 ‘삼차원적인 제국의 문서고’ 역할을 하고 영제국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국으로 표상되었던 공간이라고 보았다.

27) Chris Davies, Kate Galloway, “The Story of Seventeen Tasmanians: the Tasmanian Aboriginal Centre and Repatriation from the Natural History Museum”, *Newcastle Law Review*, 11(2009).

28) Human Tissue Act (2004)(UK) 26(3)&(2)(e), 27(1); Davies, Galloway, *Ibid.*, p. 153; <http://www.culture24.org.uk/history-and-heritage/art41684>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www.smh.com.au/news/world/aboriginal-bones-coming-home/2007/05/11/1178390554490.html>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된 유해만 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인체조직법은 100년 미만의 유해와 조직에 한해 인간유해관리공단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그것을 기관에서 책임 및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경우에 동의가 없더라도 DNA 샘플 채취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식민지시기에 약탈된 신원미상의 유해들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쪽 기관의 타협으로 DNA 샘플의 채취를 마친 후에야 17명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완전히 반환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이 논문은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20세기 후반-21세기 초반에도 식민주의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식민 과거사의 인정, 청산, 반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과거사의 인정과 청산, 식민국과 피식민국 간에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것이다. ‘문화재 전쟁’ 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19세기는 문화재 약탈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영국의 경우에 엘긴 마블(Elgin Marbles)과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등의 문화재 반환 논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 제국주의,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와 연관 짓는 박물관 연구의 진전 속에서 인간유해는 문화재 반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문화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대상이자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더해진 제국의 식민 유산이자 상처를 드러내는 소재로서 인간유해는 이제라도 보호받고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화재 약탈과 인간유해 수집 및 전시되었던 박물관은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제국을 대표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식민 유산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박물관, 근대,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시공간의 결합에서 인간유해는 더 중요하다. 한편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이라는 주제는 영국만의 특수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 박물관의 성장, 문화재 약탈, 식민지 문제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영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 수집과 반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는 것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영국의 근대 박물관과 연구기관으로 활발하게 수집되었던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도 영국의 의과대학과 박물관 등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고 실제로 유해 반환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소개함으로써 끝나지 않은 식민지 과거의 상흔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밖에도 식민지 개척과 정복,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과거 역사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과거사의 보상과 청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원주민들은 18세기에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식민지를 개척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식민지배의 잔재로 고통 받고 있다. 원주민과 백인 간의 갈등은 영국함대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온 1788년 1월 26일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폐지, 원주민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제임스 쿡 선장(Captain Cook)의 동상 철거 운동, 원주민 소유 토지문제, 원주민 마을 강제 폐쇄 조치에 항의하고 원주민들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주민 청년 클린턴 프라이어(Clinton Pryor)의 노력, 원주민의 말살을 주장하고 두개골을 수집한 우생학자 리처드 베리의 이름을 딴 멜버른(Melbourne) 대학의 건물명 개칭 운동, ‘잃어버린 세대 또는 빼앗긴 세대(the stolen generation)’ 라고 불리는 이들의 보상 문제 등에서 그 현실을 알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명한 역사학자 헨리 레이놀즈(Henry Reynolds)와 린들 라이언(Lyndall Ryan)은 잊혀져간 원주민 절멸과 학살 사실을 규명하여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없애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영국이 케냐(Kenya)의 마우마우(Mau Mau) 봉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영국의 잔혹한 행위를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한 선례를 참고하고 식민지 유산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 과거 식민주의로부터 오늘날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jyn0807@gmail.com

주제어(Key words):

박물관(museum),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Australia tasmania aborigine), 2004년 인체조직법(2004 Human Tissue Act), 인간 유해 반환(human remains repatriation), 식민지 과거사 청산(liquidation of the colonial past)

<국문초록>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장 예 나

2000년 7월 4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런던에서 만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공동체에게 인간유해를 반환할 것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다. 이후 2004년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주도 아래 인체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인체조직법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에 식민지 과거를 직접 보상하고자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2007년에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17명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반환되었고, 인간유해 수집과 반환에 관한 현실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영제국시기에 제국과 식민의 상징인 박물관에 수집 및 보관되었던 수많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는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도 영국의 많은 유명 박물관, 갤러리, 각종 과학과 의학 연구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제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의 유해가 어떠한 이유와 경로로 과거 영제국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고 오늘날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는 유해 반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함께 살펴보았다.

<Abstract>

From the Britain' s Collection of Human Remains Until
the Repatriation

- The Case of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 -

Jang Yena

John Howard(Prime Minister of Australia) and Tony Blair(Prime Minister of United Kingdom) met on July 4, 2000 in London. They concluded the joint declaration about Australia aborigine's remains repatriation. After then, 'Human Tissue Act' legislated under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of United Kingdom in 2004 would be resolved the problem on the repatriation of the Tasmania aborigines' remains. But, this act was not originally for settling liquidation of the past which Tasmania aborigines have suffered. The '2004 Human Tissue Act' added more details on the repatriation of the Tasmania aborigine' s remains which was preserved in the Museum of the Britain. The 17 Tasmania aborigine' s remains which was preserved in Natural History Museum of London were repatriated in 2007 with application of the '2004 Human Tissue Act'. Although, a lot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 s remains which had been collected from and kept in British Empire has been preserved in United Kingdom's well-known museums, galleries, various scientific fields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ion so far. This study was examined overall progress from the British' s collection of Australia Tasmania aborigine' s remains in 18-19th century(British Empire era) to the Australia Tasmania aborigine' s repatriation request of their ancestors' remains attaching with liquidation of the colonial past.

참고문헌

1. 사료

The Anatomy Act (1832)(UK)

The Anatomy Act (1869)(TAS)

British Museum Act (1963)(UK)

Human Tissue Act (2004)(UK)

Hansard 1803-2005 (UK)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Human Remains (2003)

Guidance for the Care of Human Remains in Museums (2005)

2. 단행본

윤난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전시의 담론』 (눈빛, 2002).

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크리스 고스든, 성춘택 역, 『인류학과 고고학』 (사군자, 2001).

Cove, John ed., *What the Bones Say: Tasmanian Aborigines, Science and Domination* (Ontario: McGill-Queen's Press, 1995).

George, Stocking ed., *Victorian Anthropolog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1).

MacDonald, Helen ed., *Human Remains: Dissection And Its Historie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3. 논문

박진빈, 「미국 원주민 유물 처리 문제와 반환법의 역사적 의미」, 『미국학 논집』, 43권 2호 (2011).

염운옥, 「옥스퍼드 피트리버스 박물관과 진화론」, 『영국연구』, 30권 (2013).

Benjamin Madley, "Patterns of Frontier Genocide 1803-1910: the Aboriginal Tasmanians, the Yuki of California, and the Herero of Namibia",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6-2(2004).

Cressida Fforde, "English Collections of Human Remains", *World Archaeological Bulletin*, 6(1992).

Gillian Beer, "Darwin and the Uses of Extinction", *Victorian*

Studies, 51-2(2009).

4. 웹 사이트(신문기사 및 사진자료)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4/30/contents>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collectionsearch.nma.gov.au/ce/Truganini?object=31456>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tasmanianamusing.blogspot.kr/>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

<http://www.olestig.dk/english/index.html> (검색일: 2017년 10월 15일).